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9.8.20.)됨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력 5명(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으로 환원하며, 소속기관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직위 발생에 따라 인력관리 및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을 전환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 및 직급조정 인력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빅데이터전략담당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관 밑에 빅데이터전략담당관 1명을 둔다.

②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농업관련 데이터 총괄수집 및 분석지원
2. 농업관련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거버넌스체계 마련
3. 농업경영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4. 영농단계별 농업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정보 제공
5.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농작업데이터 자동수집체계 구축
6.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7.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제12조제10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제31조제1항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8 제2호, 별표 9 제2호, 별표 10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와 같다”를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8”을 “29”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1”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4”를 “106”으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98”을 “96”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1조제1항 관련)”을 “(제30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097”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97”을 “1,110”으로 하고, 농업주사 “94”를 “97”로 하며,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4”를 “15”로 하고, 수의주사 “109”를 “110”으로 하며, 농업주사보 “123”을 “127”로 하고,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4”를 “15”로 하며, 수의주사보 “133”을 “135”로 하고,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을 “9”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9”를 “8”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3.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3.0”를 삭제하며, “농업주사 3.5”를 삭제하고, “수의주사 1.5”를 삭제하며, “농업주사보 4.5”를 삭제하고, “수

의주사보 2.5”를 삭제하며, “농업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 “및 제31조제1항 관련”을 “관련”으로 하고,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097”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97”을 “1,110”으로 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 “5”를 “4”로 하며, 수의사무관 “20”을 “19”로 하고, 농업주사 “92”를 “96”으로 하며,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4”를 “15”로 하고, 수의주사 “105”를 “107”로 하며, 농업주사보 “116”을 “120”으로 하고,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4”를 “15”로 하며, 수의주사보 “126”을 “128”로 하고, “운전주사보 1”를 삭제하며, “운전서기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을 “9”로 하고, 운전서기보 “11”을 “1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9”를 “8”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3.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3.0”을 삭제하고, “농업주사 3.5”를 삭제하며, “수의주사 1.5”를 삭제하고, “농업주사보 4.5”를 삭제하며, “수의주사보 2.5”를 삭제하고, “농업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및 제31조제1항 관련”을 “관련”으로 하고,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442”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442”를 “1,452”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을 “19”로 하며, 방호서기보 “6”을 “5”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0.0”를 삭제한다.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및 제31조제1항 관련”을

“관련”으로 하고,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456”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456”을 “1,46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을 “19”로 하며, 방호서기보 “6”을 “5”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0.0”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존속기간이 설정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획조정과, 원산지관리과 및 시험연구소 성분검정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획조정과장, 원산지관리과장 및 시험연구소 성분검정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품질검사과장, 시험연구소 안전성분석과장이 그 업무를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존속기간이 설정되는 별표 7에 따른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3명,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명, 사무운영주사보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
·전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
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명, 행정주사보·농업주
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4명, 사무운영서기보 2
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존속기간이 설정되는 별표 9에 따른 서기관·기
술서기관·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명,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사무관 1명, 농업사무관 9명,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3명,
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4명, 수의사무관 10명, 농업주사 12명, 수의주사 7명, 행정주
사 3명, 전산주사 2명, 농업주사보 5명, 수의연구관 4명,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4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수의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
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명, 농업주사 1
3명, 행정주사 3명, 수의주사 10명, 농업주사보 12명, 행정주사보 3명, 수
의주사보 7명, 전산주사보 2명, 농업서기 5명, 수의연구사 8명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존속기간이 설정되는 별표 11에 따른 서기관·기
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6명,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
관 12명,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6명, 전산주사 1명, 농업주
사보 5명, 운전주사보 1명, 열관리운영주사보 1명, 사무운영주사보 2명,

농업서기 4명, 운전서기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6명,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2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6명, 전산주사보 1명, 농업서기 5명, 운전서기보 1명, 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 농업서기보 4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빅데이터전략담당관) ①</u>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u> <u>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u> <u>항에 따라 차관 밑에 빅데이터</u> <u>전략담당관 1명을 둔다.</u> <u>②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은 서기</u> <u>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u> <u>다.</u> <u>③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은 다음</u> <u>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u> <u>다.</u> <u>1. 농업관련 데이터 총괄수집</u> <u>및 분석지원</u> <u>2. 농업관련 데이터 표준화 및</u> <u>품질관리 거버넌스체계 마련</u> <u>3. 농업경영 빅데이터 통합 플</u> <u>랫폼 구축</u> <u>4. 영농단계별 농업인 상황에</u> <u>맞는 맞춤형정보 제공</u> <u>5.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농</u> <u>작업데이터 자동수집체계 구</u> <u>축</u> <u>6.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u> <u>7.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u> <u>rix) 데이터 구축 및 관리</u>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① ~ ⑨
(생략)

⑩ 원예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⑪ ~ ⑮ (생략)

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
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8 제2호, 별
표 9 제2호, 별표 10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
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
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9. (현행과 같음)

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
화 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⑪ ~ ⑮ (현행과 같음)

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
원의 운영) ① -----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
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삭제>

신·구정원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8</u>	<u>29</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u>	<u>1</u>	-1
·	·	·	
·	·	·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104</u>	<u>106</u>	+2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 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u>98</u> · ·	 <u>96</u> · ·	 -2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097</u>	<삭 제>	-1,097
일반직 계	<u>1,097</u>	<u>1,110</u>	+13
·	·	·	
·	·	·	
농업주사	<u>94</u>	<u>97</u>	+3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u>14</u>	<u>15</u>	+1
·	·	·	
·	·	·	
수의주사	<u>109</u>	<u>110</u>	+1
·	·	·	
·	·	·	
농업주사보	<u>123</u>	<u>127</u>	+4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u>14</u>	<u>15</u>	+1
·	·	·	
수의주사보	<u>133</u>	<u>135</u>	+2

·	·	·	
·	·	·	
행정서기보	<u>4</u>	<u>5</u>	+1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8</u>	<u>9</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8</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3.0</u>	<u><삭 제></u>	-13.0
<u>일반직 계</u>	<u>13.0</u>	<u><삭 제></u>	-13.0
<u>농업주사</u>	<u>3.5</u>	<u><삭 제></u>	-3.5
<u>수의주사</u>	<u>1.5</u>	<u><삭 제></u>	-1.5
<u>농업주사보</u>	<u>4.5</u>	<u><삭 제></u>	-4.5
<u>수의주사보</u>	<u>2.5</u>	<u><삭 제></u>	-2.5
<u>농업서기보</u>	<u>1.0</u>	<u><삭 제></u>	-1.0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097</u>	<삭 제>	-1,097
일반직 계	<u>1,097</u>	<u>1,110</u>	+13
·	·	·	
·	·	·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	<u>5</u>	<u>4</u>	-1
·	·	·	
·	·	·	
수의사무관	<u>20</u>	<u>19</u>	-1
·	·	·	
·	·	·	
농업주사	<u>92</u>	<u>96</u>	+4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u>14</u>	<u>15</u>	+1
·	·	·	
·	·	·	
수의주사	<u>105</u>	<u>107</u>	+2

·	·	·	
·	·	·	
농업주사보	<u>116</u>	<u>120</u>	+4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u>14</u>	<u>15</u>	+1
·	·	·	
수의주사보	<u>126</u>	<u>128</u>	+2
·	·	·	
운전주사보	<u>1</u>	<u><삭제></u>	
·	·	·	
운전서기	<u>1</u>	<u><삭제></u>	
·	·	·	
행정서기보	<u>4</u>	<u>5</u>	+1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8</u>	<u>9</u>	+1
·	·	·	
운전서기보	<u>11</u>	<u>13</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8</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3.0</u>	<u><삭 제></u>	-13.0
<u>일반직 계</u>	<u>13.0</u>	<u><삭 제></u>	-13.0
<u>농업주사</u>	<u>3.5</u>	<u><삭 제></u>	-3.5
<u>수의주사</u>	<u>1.5</u>	<u><삭 제></u>	-1.5
<u>농업주사보</u>	<u>4.5</u>	<u><삭 제></u>	-4.5
<u>수의주사보</u>	<u>2.5</u>	<u><삭 제></u>	-2.5
<u>농업서기보</u>	<u>1.0</u>	<u><삭 제></u>	-1.0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442</u>	<삭 제>	-1,442
일반직 계	<u>1,442</u>	<u>1,452</u>	+10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8</u>	<u>19</u>	+11
·	·	·	
·	·	·	
방호서기보	<u>6</u>	<u>5</u>	-1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10.0</u>	<삭 제>	-10.0
일반직 계	<u>10.0</u>	<삭 제>	-10.0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10.0</u>	<삭 제>	-10.0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456</u>	<삭 제>	-1,456
일반직 계	<u>1,456</u>	<u>1,466</u>	+10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8</u>	<u>19</u>	+11
·	·	·	
·	·	·	
방호서기보	<u>6</u>	<u>5</u>	-1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10.0</u>	<삭 제>	-10.0
일반직 계	<u>10.0</u>	<삭 제>	-10.0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10.0</u>	<삭 제>	-10.0